

무배당

내 사업 장기종합프로젝트 공제약관

보통약관

공제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 1 조 (공제계약의 성립)

- ① 공제계약은 공제계약자의 청약과 농협(중앙회, 지역조합 및 품목조합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이하 “공제계약”은 “계약”, “공제계약자”는 “계약자”라 합니다)
- ② 농협은 공제대상자(이하 “피공제자”라 합니다)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③ 농협은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농협이 제1회 공제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보장부분 예정이율(이하 “예정이율”이라 합니다)+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1회 공제료를 납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농협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공제의 공제계약대출이율(이하 “공제계약대출이율”이라 합니다)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제1회 공제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후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농협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드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합니다)를 이용하여 약관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5호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분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농협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내용, 공제료 납입, 공제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공제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③ 농협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분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분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및 공제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공제자가 동일하고 공제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농협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공제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4 조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를 농협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농협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공제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공제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농협에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이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1. 계약에 관하여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있었을 경우
2. 공제에 가입한 물건(이하 「공제목적」이라 합니다)에 이미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의 원인이 생긴 것을 알면서도 이를 농협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제 6 조 (계약내용의 변경)

- ① 계약자는 농협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공제기간

2. 공제가입금액
 3.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공제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4.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농협은 계약자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약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25조(해약환급금)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계약자가 제1항 제3호 중 사망공제금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공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제1항 제3호 중 피공제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이 공제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망하거나 파산, 이민 또는 이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는 경우
 2. 계약자가 그와 고용관계에 있는 피공제자를 해고 또는 교체한 경우

<용어풀이>

고용관계라 함은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제 7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계약의 소멸)

- ① 농협이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 번의 사고에 대하여 공제가입금액(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은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공제목적에 대한 계약은 소멸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만기환급금 및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적립부분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③ 공제목적이 둘 이상인 때에는 각각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제 9 조 (농협의 보장의 시기 및 종기)

- ① 농협의 보장은 공제기간의 첫날 오후 4시에 시작하며 마지막날 오후 4시에 끝납니다. 이 경우 시각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 발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1회 공제료를 받기 전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장 하지 아니합니다.
- ③ 농협이 계약자로부터 계약의 청약과 함께 제1회 공제료를 받은 경우에 그 청

약을 승낙하기 전에 계약에서 정한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농협은 계약상의 보장을 합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1. 제1항에서 정한 보장의 시기가 개시되지 아니한 경우
2. 제29조(계약전 알릴 의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농협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 내용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농협이 증명하는 경우
3. 제3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하여 농협이 보장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⑤ 제2항 및 제3항의 공제료는 제1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보상하는데 필요한 공제료(이하 「보장공제료」라 합니다)와 농협이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공제료(이하 「적립공제료」라 합니다)로 구성됩니다.(이하 「보장공제료」와 「적립공제료」를 합하여 「공제료」라 합니다.)

공제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제 10 조 (공제료의 납입)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 농협은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기관(우체국 포함)을 통하여 공제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제 11 조 (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공제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 최고(독촉)기간으로 하며, 농협은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독촉)하고 납입 최고(독촉)기간 안에 공제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 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농협은 약정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2회 이후의 공제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공제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농협은 계약자(타인을 위한 공제의 경우 특정된 수익자 포함)에게 납입 최고(독촉)기간 안에 연체공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공제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을 납입 최고(독촉)기간이 끝나기 15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알려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12 조 (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11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농협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며, 농협이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공제료와 이에 대한 연체된 이자(보장공제료에 대하여 예정이율+1% 범위내에서 농협이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②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관하여는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 제9조(농협의 보장시기 및 종기), 제29조(계약전 알릴 의무) 및 제3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공제금등의 지급(농협의 주된 의무)

제 13 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목적에 화재(벼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에 따른 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생긴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 ② 농협은 공제목적에 전용주택 및 이에 수용된 가재일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입은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지출한 잔존물제거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④ 제3항의 잔존물제거비용이라함은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오염물질 제거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및 차에 실는 비용을 말합니다, 다만, 이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서 보장하지 아니하는 위험으로 공제목적에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공제목적의 범위)

- ① 아래의 물건은 공제목적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통화(기념주화 포함), 유가증권, 인지, 우표 등 이와 비슷한 것
 2. 자동차(자동3륜차, 자동2륜차를 포함합니다). 단, 전시용 자동차는 제외합니다.
- ② 아래의 물건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하여야만 공제목적에 됩니다.
 1. 귀금속, 귀중품(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100만원이상),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단, 상품인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③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공제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 건물의 부속물 : 피공제자 소유인 간막이, 대문, 담, 공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착물 : 피공제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건물의 부속설비 : 피공제자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가재, 동산, 집기비품인 경우 : 피공제자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

④ 주택을 공제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공제 목적이라 함은 아래의 물건을 말한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또는 그 수용가재

㉠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포함)

㉡ 주택의 부속건물로써 가재만을 수용하는 데 쓰이는 것

㉢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써 각 호(실)가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다만, 아파트에는 단지내 상가를 제외한 구내의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합니다.

2. 주택비용 건물로써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 치료(안수, 침구(침질·뜸질), 접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제 1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 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유로 손해가 생긴 때에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3. 피공제자에게 공제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용인 또는 피공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

4. 화재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

5. 공제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공제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6.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전용주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7.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8.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서 현저히 평온을 해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9.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0. 제9호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1. 발전기, 여자기(정류기를 포함합니다),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공제목적에 생긴 화재,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중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6 조 (손해방지의무)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금액을 손해액에서 뺍니다.

② 농협은 제1항의 손해방지 또는 경감에 소요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이하 「손해방지비용」이라 합니다)은 공제에 가입한 금액(이하 「공제가입금액」이라 합니다)의 공제목적의 가액(이하 「공제가액」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제18조(지급공제금)의 계산방법에 준하여 이를 보상합니다.

③ 농협은 제18조(지급공제금)의 지급공제금에 제2항의 손해방지비용을 합한 금액이 공제가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이를 지급합니다.

제 17 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농협이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 있어서의 공제가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 18 조 (지급공제금)

① 농협이 지급할 공제금은 아래에 따라 계산합니다.

1.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해당액 이상일 경우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2.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액의 80% 미만인 경우 :
공제가입금액

$$\text{손해액} \times \frac{\text{공제가입금액}}{\text{공제가액의 80\% 해당액}}$$

다만,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관계없이 공제목적이 상품, 제품, 반제품, 원재료일 때
공제가입금액

$$\text{손해액} \times \frac{\text{공제가입금액}}{\text{공제가입금액}}$$

다만, 공제가입금액이 공제가입금액보다 많을 때에는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보
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공제가입금액의 합계액이 공제가입금액보다
많을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공제금을 계산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공제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이 계약의 공제가입금액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의 합계액}}{\text{공제가입금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공제금의 계산방법을 달리 하는 경우:
이 계약에 의한 공제금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공제금}}{\text{공제가입금액}}$$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공제금의 합계액

- ③ 하나의 공제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공제목적에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공제가
입금액에 대한 각 공제가입금액의 비율로 공제가입금액을 비례배분 합니다.

제 19 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농협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 및 제2항의 손해에 의한 공제금과
제13조(보상하는 손해) 제3항의 잔존물제거비용은 각각 제18조(지급공제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공제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보험계약을 포
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농협은 이 계약에 의
한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피공제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공제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농협의 제1항
에 의한 지급공제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 21 조 (현물보상)

농협은 손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재건축, 수리 또는 현물의 보상으로써
공제금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22 조 (대위권)

- ① 농협이 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농협은 지급한 공제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농협이 보상한 금액이 피공제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공제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제1항에 의하여 농협이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농협이 요구하는 증거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필요한 비용은 농협이 부담합니다.
-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제 23 조 (잔존물)

농협이 잔존물을 인수하지 아니할 뜻을 나타내고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잔존물은 피공제자의 소유가 됩니다.

제 24 조 (만기환급금)

농협은 계약자가 공제료를 완납하고 공제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부분 순공제료(적립공제료에서 사업비를 공제한 공제료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하여 공제료납입일(농협에 입금된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공제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제25조(해약환급금)의 제1항에 준하여 그 때까지 농협이 적립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계약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25 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적립부분 순공제료에 대하여는 농협은 제1회 공제료를 받은 날부터 공제료 납입경과기간에 따라 아래의 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시점 이후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며, 최저보장이율은 연 2%로 합니다.

공제료납입 경과기간	적 용 이 율
1년미만	공시이율 × 85%
2년미만	공시이율 × 90%
3년미만	공시이율 × 95%

- ② 농협은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농협이 정한 이율로 하며, 매월 1일부터 해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제 26 조 (배당금의 지급)

농협은 이 공제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 27 조 (소멸시효)

공제금청구권, 공제로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28 조 (공제금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피공제자는 손해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을 잃게 됩니다.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공제금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 ②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할 때에는 그 해당 손해

공제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 29 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계약을 맺은 후 공제목적에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공제목적에 대하여 이 공제와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을 맺을 때
 2. 공제목적에 양도할 때
 3. 그 건물의 구조를 변경, 개축, 증축하거나 계속하여 15일이상 수선 할 때
 4. 공제목적 또는 공제목적물을 수용하는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
 5. 공제목적인 건물 또는 공제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30일이상 비워두거나 휴업하는 경우
 6. 공제목적에 다른 장소로 옮길 때
 7. 위 이외에 위험이 뚜렷히 증가할 때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1 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농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통약관 제29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30조(계약후 알릴 의무)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상당한 이유없이 손해조사를 거부 또는 회피할 때
- ② 제1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농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농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을 때
 3.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농협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손해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32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농협은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중 사기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 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농협이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 지급 등의 절차

제 33 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 농협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34 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 1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대표자로 지정된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 계약에 관하여 농협이 계약자 또는 수익자 1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 35 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공제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 ③ 농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피공제자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 36 조 (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공제자(또는 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공제금 또는 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농협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수익자가 공제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37 조 (공제금의 지급)

- ① 농협은 손해발생 통지 및 제36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서 정한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공제금은 3영업일, 배상책임에 관한 공제금은 10영업일, 재산손해에 대한 공제금은 20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농협이 공제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1항의 지급기일 초과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구체적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에게 서면통지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농협은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농협이 추정하는 공제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공제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④ 농협은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로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제31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농협의 조사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농협은 공제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38 조 (환급금의 지급)

- ① 농협은 계약자 및 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하여 드리며,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1%를,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은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② 농협은 만기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그 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③ 농협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수익자에게 알린 경우의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청구일 까지의 기간 중 1년 이내의 기간은 예정이율의 50%, 1년을 초과하는 기간은 1% 적용한 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39 조 (공제금을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공제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수익자)는 농협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하며, 분할지급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40 조 (계약내용의 교환)

농협은 공제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공제기관(공제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합니다) 및 공제(보험을 포함합니다)관련 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의 규정을 따릅니다.

1.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계약일, 공제종목, 공제료, 공제가입금액 등 계약내용
3. 공제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
4. 피공제자의 상해 및 질병에 관한 정보

제 41 조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내에서 농협이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공제 등 공제상품의 종류에 따라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협은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공제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제11조(공제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 등

제 42 조 (공제목적에 대한 조사)

농협은 언제든지 공제목적 또는 이들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 43 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 관계인과 농협은 농협중앙회에 설치된 분쟁조정심의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44 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농협과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 45 조 (약관의 해석)

- ① 농협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 ② 농협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제 46 조 (농협이 제작한 공제안내장의 효력)

직원 등이 청약과정에서 사용한 공제안내장(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하여 만든 서류 등을 말합니다)의 내용이 이 약관의 규정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47 조 (농협의 손해배상책임)

농협은 계약과 관련하여 직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및 농협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제 48 조 (법률에 의한 지급보장)

농협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공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제 49 조 (준거법)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관 약 폐 투

도난손해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그 미수를 포함합니다)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이하 "도난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농협은 도난당한 공제의 목적을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목적에 생긴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
 2. 피공제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도난
 3. 전쟁,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으로 생긴 도난
 4. 화재나 지진, 분화, 해일, 폭발 또는 그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도난
 5. 공제목적이 건물구내 밖에 있는 동안에 생긴 도난
 6. 공제목적이 들어 있는 건물을 계속하여 72시간 이상 비워 둔 사이에 생긴 도난
 7. 공제사고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알지 못한 도난
- ② 일반물건의 경우에는 제1항 이외에 아래와 같은 손해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안에 있는 상품, 원료 또는 영업소용 집기등을 공제목적으로 한 때에 고객이나 그 밖의 사람에 의한 발품이나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이 생긴 분실 또는 망실의 손해
- ③ 농협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 중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지급공제금)

- ① 농협은 제1조(보상하는 손해) 제1항의 도난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보험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공제금의 계산방법을 같이 하는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공제가입금액}}{\text{이 계약과 다른 계약의 공제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공제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는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에 의한 공제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공제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공제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공제목적에 계약한 경우에는 전체 공제가액에 대한 각 공제가액의 비율로 공제가입금액을 비례배분 합니다.

제 4 조 (도난품의 귀속)

농협이 도난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도난당한 공제목적에 대하여 공제금의 공제가액에 대한 비율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피공제자는 그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협에 내고 그 도난품의 소유권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공제금등 청구시 구비서류)

계약자, 피공제자(또는 수익자)가 공제금을 청구할 때에는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6조(공제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의 구비서류 및 도난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특별약관의 소멸)

보통약관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지급공제금), 제19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및 제24조(만기환급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강도손해위로금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권(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 등이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공제목적의 구

내에서 제3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 재물을 강제로 빼앗김으로서 입은 손해(이하 "강도손해"라 합니다)가 발생한 경우 1사고당 공제가입증권(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강도손해위로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강도손해는 형법 제333조 내지 제339조에 정한 강도행위에 의한 결과로 생긴 손해만을 말하며 단순한 절도행위(형법 제329조 내지 332조)의 결과로 생긴 손해는 강도손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아래와 같은 강도손해에 대하여는 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가족, 친족, 고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감수인(監守人)이 저지르거나 가담한 강도손해
2. 전쟁, 폭동, 소요, 노동쟁의 또는 이와 유사한 사변중에 생긴 강도손해
3. 지진, 분화, 해일, 풍수해 또는 그 밖의 변재가 일어났을 때에 생긴 강도손해

제 3 조 (손해발생의 통지 및 조사)

- ①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이를 농협에 알리고 아래의 서류를 빠른 시일안에 농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관할 경찰서의 강도신고확인서
 2. 그밖의 필요한 증거서류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농협은 필요한 경우에 피공제자 또는 그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고용인, 고객 등을 대상으로 사고상황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자세한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특별약관의 소멸)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지급공제금), 제19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및 제24조(만기환급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공제기간 중에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기, 여자기, 정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1사고당 5만원을 빼고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다만,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11호는 제외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특별약관의 소멸)

보통약관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4조(만기환급금)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구내 냉동(냉장)위험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공제의 목적이 있는 구내에서의 화재로 냉동(냉장)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 인한 온도의 변화로 공제의 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특별약관의 소멸)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4조(만기환급금)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구내 폭발·파열위험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공제기간 중에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6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제목적에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공제목적에 생긴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수압기(이들의 부속장치를 포함합니다.)등의 물리적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부분 또는 회전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보통약관 제 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다만, 보통약관 제 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제1항 제6호는 제외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구내 폭발 또는 파열사고가 났을 때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특별약관의 소멸)

보통약관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4조(만기환급금)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특수건물(떨어지는 물체위험 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상하는 손해 이외에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건물(동산은 제외합니다. 이하 "특수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는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 떨어지는 물체로 인하여 공제목적에 생긴 손해도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보통약관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서 정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① 공제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 ② 공제목적인 네온사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식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제 3 조 (특별약관의 소멸)

보통약관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4조(만기환급금)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신규특수건물의 안전점검전 선계약 추가약관

이 계약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전 계약을 체결키로 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안전점검을 실시후 공제목적물의 구조, 급수, 면적, 작업공정, 직업등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그 결과에 따라 공제가입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공제료의 차액을 받거나 돌려드리기로 합니다.

※ 환급 또는 추징의 기준 시점

1. 공제가입금액의 조정 : 안전점검 시점
2. 적 용 요 율 : 변경사유가 발생한 시점

위험품 추가약관

※ 보통품만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기간중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건물안에는 화재공제요율서상의 A급, B급, 특별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 A급위험품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기간중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건물안에는 화재공제요율서상의 B급, 특별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 B급위험품을 수용할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공제기간중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건물안에는 화재공제요율서상의 특별위험품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공제가입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하며,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장애(이하 "신체장애"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① 농협이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공제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공제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 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공제자가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이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공제자가 농협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농협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2.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 : 피공제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 3 조(보상한도)

- ① 농협이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농협은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당해 공제년도 (초년도[첫째 년도]는 공제기간의 첫날부터 1년간, 다음 년도 이후는 각각 공제기간의 첫날 당해일부터 1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보상총액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총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농협은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항의 제2호의 비용, 제3호의 비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과 제4호의 비용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농협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열거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

하지 아니합니다.

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4.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 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5.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 배상책임
6.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7.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 되어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의사(한 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의무공제인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또는 화재공제의 신체손해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5 조 (양도)

이 공제목적의 양도는 농협의 서면동의 없이는 농협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농협이 서면동의한 경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내에서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 6 조 (조사)

- ① 농협은 공제기간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농협은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내에서는 공제기간중 또는 공제기간 종료후 3년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농협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농협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농협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

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협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손해방지의무)

-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보험을 포함합니다)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특별약관의 소멸)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4조(만기환급금)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용 어 풀 이 】

신체 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 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 손해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 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 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 상의 배상 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임차자(화재)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피공제자가 임차한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장기종합
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
서 정한 화재로 인하여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
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
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피공제자의 범위)

피공제자(임차자)와 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 방문자나 피공제자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 자는 피공제자로 봅니다.

제 3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임차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의 사유 중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타인을 위한 계약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타인을 위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 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3. 임차자가 관리하는 기간에 발생한 급·배수관, 냉·난방장치, 습도조절장치, 소화전, 업무용기구, 가사용기구 및 스프링쿨러로부터의 증기, 물 또는 내용물의 누출 혹은 일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4. 지붕, 문, 창, 통풍장치 등에서 새어든 비 또는 눈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부동산을 제외한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자연소모, 녹, 쥐가 쓸거나 벌레가 먹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사고로 생긴 것이 아닌 도장제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8.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손해

제 4 조(양도)

이 공제목적의 양도는 농협의 서면동의 없이는 농협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농협이 서면 동의한 경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 5 조(조사)

- ① 농협은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농협은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공제기간 중 또는 공제기간 종료 후 3년 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 (보험을 포함합니다)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을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농협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농협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농협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협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손해방지의무)

-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지급공제금)

- ① 농협은 보통약관 제18조(지급공제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할 공제금을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보상한도액과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건물의 싯가(이하 "공제가액"이라 합니다)가 같을 때 : 손해액 전액
 2. 보상한도액이 공제가액보다 적을 때 :

$$\text{손해액} \times \frac{\text{보상한도액}}{\text{공제가액}}$$

3. 보상한도액이 공제가액보다 많을 때 : 공제가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배상책임의 목적인 임차물건에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화재공제의 공제가입금액과 이 배상책임공제의 보상한도액의 합계액이 공제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공제금의 분담)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 11 조 (손해보상 후의 계약)

- ① 이 특별약관에 따라 농협이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보상한도액(공제가액을 한도로 합니다)의 80% 해당액 이하인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보상한도액은 감액되지 아니하며, 80%를 넘을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지급공제금), 제19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및 제24조(만기환급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용 어 풀 이 】

신체 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 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 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공제자나 피해자의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 상의 배상 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공제자가 부담할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농협은 공제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수건물"이라 함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3호와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2.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이라 함은 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배상책임을 말합니다. 단, 특수건물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로 인한 민법상의 배상책임을 포함합니다.
3. "타인"이라 함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법인인 경우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기관) 이외의 사람을 말합니다.

제 3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해자의 고의·중과실 또는 법령위반으로 생긴 화재(공제목적이 전용주택인 경우에는 폭발, 파열을 포함합니다)로 피해자 본인이 입은 손해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噴火),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제 4 조 (피공제자의 권리, 의무의 승계)

특수건물이 양도된 경우에 양수인 또는 그 지정하는 자는 이 계약에 의한 피공제자의 권리,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제 5 조 (공제금의 지급과 보상한도)

이 특별약관에 따른 공제금의 청구 및 지급방법과 보상한도 (【별표1】(가스사고배상책임/신체손해배상책임의 부상급별 지급공제금표) 및 【별표2】(가스사고배상

책임/신체손해 배상책임의 후유장해급별 지급공제금표) 참조)는 법 제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시행령 제5조 내지 제8조, 동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 6 조 (공제금의 비례배분)

피공제자가 둘 이상인 때에는 농협이 지급할 공제금을 한도로 하여 재해를 입은 특수건물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7 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농협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농협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농협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이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협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손해방지의무)

-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 3 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보험을 포함합니다)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특별약관의 소멸)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4조(만기환급금)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① 건물소유자의 종업원배상책임부담보 추가특별약관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및 신체손해배상 책임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 이라 합니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종업원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피공제자가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부담할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이 추가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주) 이 추가특별약관은 피공제자인 건물소유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경우 피공제자의 요청에 따라 발급됩니다.

가스사고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서 "가스사고"라함은 가스로 인한 폭발, 파열, 화재 및 가스의 누출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사망과 유독가스를 우연하게 일시에 흡입, 흡수, 섭취하여 발생한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를 입히거나 재물이 없어짐, 손상, 망가지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① 농협이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2. 피공제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함에 따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공제자가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이 손해배상 처리를 할 경우 피공제자가 농협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가입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농협은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피해자의 과실 및 직업·연령·수입 등을 고려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1인당 【별표1】 (가스사고배상책임/신체손해배상책임의 부상급별 지급공제금표)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치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별표3】 (가스사고배상책임의 후유장해급별 지급공제금표)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의 합산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의 금액의 합산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③ 제1항의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보험가입대상자가 가입한 공제가입증서(공제험증권)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농협은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 제1호의 단서를 제외하고 실손해액(피해자의 과실 및 직업·연령·수입 등을 고려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말합니다)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 피해자 1인당 8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
1인당 【별표1】 (가스사고배상책임/신체손해배상책임의 부상급별 지급공제금표)에서 정하는 금액
3. 부상의 경우 그 치료가 완치된 후부터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장해(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가 생긴 때에는
1인당 【별표2】 (가스사고배상책임/신체손해배상책임의 후유장해급별 지급공제금표)에 정하는 금액
4. 부상자가 치료 중에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 금액의 합산액
5. 부상한 자에게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제2호와 제3호 금액의 합산액

6. 제3호의 금액을 지급한 후 당해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
7.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1사고당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④ 제1항의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에 대한 농협의 보상한도는 매사고마다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제 3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농협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2. 피공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배상책임
 3. 피공제자의 피용인이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4.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5.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6.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7. 가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배상책임
 8. 피공제자가 판매, 공급한 재물 또는 피공제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재물 또는 작업목적물의 망그러뜨림 그 자체에 따른 배상책임

제 4 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농협은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20조(공

제금의 분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공제
를 포함합니다) 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
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
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만
을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제 5 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
을 서면으로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
을리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농협이 손해배
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농협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농협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농협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피공제자
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
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
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농협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
한 때에는 농협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손해방지의무)

-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
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

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 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계약후 알릴 의무)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보험을 포함합니다)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특별약관의 소멸)

보통약관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4조(만기환급금)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농협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열거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로 생긴 배상책임
 2.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를 의미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3. 피공제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배상책임
 4. 피공제자의 피용인이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5.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배상책임
 6.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7. 피공제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 및 피공제자가 수행한 작업상의 결함으로 인한 당해 음식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공제자가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음식물에 대하여 수질오염, 토지오염,

- 대기오염 등 일체의 환경오염으로 생긴 배상책임손해 및 오염제거 비용
- 9. 결함있는 음식물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3 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① 농협이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 2. 피공제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그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 3.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4. 피공제자가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5.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이 손해배상 처리를 할 경우 피공제자가 농협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 6.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함
- ② 농협은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하되 보상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 2.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합계 : 매사고마다 50만원
 - 3.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액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③ 당해공제년도(**초년도[첫째 년도]**는 공제기간의 첫날로부터 1년간, 다음년도 이후는 각각 공제기간의 첫날 해당일로부터 1년을 말합니다)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농협의 보상총액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4 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농협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농협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농협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협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손해방지의무)

-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농협은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20조(공제금의 분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배상책임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보험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금액만을 보상하는 책임을 집니다. 단, 사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보험을 포함합니다)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특별약관의 소멸)

보통약관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4조(만기환급금)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의약품등 위험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의약품등 (의약품, 의약부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기타 유사한 상품)을 타인에게 조제,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하여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① 농협이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공제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공제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 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공제자가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이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공제자가 농협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농협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2.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 : 피공제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 3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농협은 피공제자가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조제, 판매

- 또는 공급한 의약품으로 생긴 배상책임
- 2. 결함있는 의약품 등의 회수, 검사 또는 대체비용에 대한 배상책임
- 3. 의약품 등 자체의 하자에 기인한 배상책임
- 4. 전매(轉賣)를 목적으로 판매 또는 공급한 의약품 등에 기인한 배상책임
- 5. 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조제 또는 판매된 의약품에 기인한 배상책임
- 6. 의약품 등 제조회사의 책임을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 약속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
- 7. 제3자에게 아무런 신체상의 이상이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배상책임

제 4 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농협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농협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농협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협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6 조 (손해방지의무)

-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를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보험을 포함합니다)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특별약관의 소멸)

보통약관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4조(만기환급금)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약국시설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약국시설 (이하 "시설"이라 하며,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약국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장해(이하 "신체장해" 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이하 "재물손해" 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피공제자가 아래에 열거한 약국시설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민법 제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음)에 대한 배상책임
2. 피공제자의 피용인이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 포함)로 생긴 배상책임
3.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
4.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 비용
7.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

(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 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9. 급배수관, 온냉방장치, 소화전, 스프링쿨러 기타 업무용 또는 가사용 기구에서의 배출, 누출, 범람하는 액체, 기체, 증기 등에 의해 재물의 멸실, 훼손 혹은 오손에 기인한 배상책임
10.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 하는 자동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작업의 종류(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의무공제인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또는 화재공제의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3 조 (지급공제금)

① 농협이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공제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공제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 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공제자가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이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공제자가 농협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농협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2.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 : 피공제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비

용은 보상한도액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 4 조 (양도)

이 공제목적의 양도는 농협의 서면동의 없이는 농협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농협이 서면 동意的한 경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 5 조 (조사)

- ① 농협은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농협은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공제기간중 또는 공제기간 종료 후 3년 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계약후 알릴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보험을 포함합니다)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농협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농협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손해방지의무)

-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특별약관의 소멸)

보통약관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4조(만기환급금)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 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공제자나 피해자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주유소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 1조 (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농협이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 ② 피공제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④ 피공제자가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⑤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이 손해배상 처리를 할 경우 피공제자가 농협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 ⑥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보상한도)

- ① 농협이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농협은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당해공제년도(초년도[첫째 년도]는 공제기간의 첫날부터 1년간 다음년도 이후는 각각 공제기간의 당해일부터 1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농협의 손해배상금 보상총액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농협은 제2항의 배상금과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항 내지 제5항의 비용전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의 비용 중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과 제6항의 비용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농협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4.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시설 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6.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 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공제자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의무공제인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또는 화재공제의 신체손해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 5 조 (양도)

이 공제목적의 양도는 농협이 서면동의 없이는 농협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농협이 서면동의한 경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 6 조 (조사)

- ① 농협은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농협은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공제기간중 또는 공제기간 종료 후 3년 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계약후 알릴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보험을 포함합니다)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농협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농협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농협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손해방지의무)

-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뺏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특별약관의 소멸)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4조(만기환급금)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용어풀이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 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공제자나 피해자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피공제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학교시설"이라 합니다) 및 학교시설이나 학교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학교업무(이하 "학교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장애(이하 "신체장애" 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 라 합니다.) 피공제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농협이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 ② 피공제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 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④ 피공제자가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⑤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이 손해배상 처리를 할 경우 피보공제가 농협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 ⑥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3 조 (보상한도)

- ① 농협이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농협은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대인, 대물 각각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당해공제년도(초년도[첫째 년도]는 공제기간의 첫날부터 1년간 다음년도 이후는 각각 공제기간의 당해일부터 1년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농협의 손해배상금 보상총액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농협은 제2항의 배상금과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항 내지 제5항의 비용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금액이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3항 및 제4항의 비용 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과 제6항의

비용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농협은 피공제자가 아래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3.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4.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학교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7.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 포함)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함
 - ㉠ 피공제자의 시설내에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0.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 포함),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의무공제인 가스사고배상책임공제 또는 화재공제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그 초과액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4.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총기(공기총을 포함합니다) 또는 동·식물의 소유, 임차, 사용이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학교시설을 타인이 임차하여 사용하는 중 그 타인(그 타인의 구성원을 포함)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일부를 사용할 경우 그 밖의 지역에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교직원이나 학생들의 개인적인 배상책임
 20. 학교의 운동선수로 등록된 자 또는 그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한 연습, 경기 또는 지도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군사훈련 및 데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③ 농협은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가 피공제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1호가 계약자의 고의인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 5 조 (양도)

이 공제목적의 양도는 농협의 서면동의 없이는 농협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농협이 서면동의한 경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 6 조 (조사)

- ① 농협은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농협은 이 공제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공제기간 중 또는 공제기간 종료 후 3년 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계약후 알릴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보험을 포함합니다)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손해의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농협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농협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농협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손해방지의무)

-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특별약관의 소멸)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4조(만기환급금)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 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공제자나 피해자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주차장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공제기간 중에 피공제자가 소유,사용,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이하 "시설" 이라 하며,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이하 "업무" 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 라 합니다.)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농협이 보상하는 손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 배상금

② 피공제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1. 피공제자가 제7조(손해방지 의무)의 제1항의 제1호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그 방법을 조사하여 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합니다.
2. 피공제자가 제7조(손해방지 의무)의 제1항의 제2호의 절차를 취하는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3. 피공제자가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4. 증권상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5. 피공제자가 제9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농협의 해결)의 제2항, 제3항의 농협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제 3 조 (보상한도)

- ① 농협이 보상하는 손해배상금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농협은 1회의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이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당해 공제년도(초년도[첫째 년도]는 공제기간의 첫날로부터1년간, 다음년도 이후는 각각 공제기간의 당해일로부터1년을 말합니다.이하 같습니다.)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농협의 손해배상금 보상총액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농협은 제2항의 손해배상금과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의 제2항의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 전액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 제2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의 제2항의 제2호의 비용, 제3호의 비용중 소송비용의 인지대 및 변호사비용과 제4호의 비용은 증권상의 보상한도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4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계약자의 고의
 3. 전쟁,외국의 무력행사,혁명,내란,사변,폭동,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4. 지진, 분화(噴火),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5.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해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6.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7. 피공제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 비용.
9.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 및 주차목적으로 수탁받은 고객의 차량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0. 피공제자의 근로자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1.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2.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자가 주차의 목적으로 수탁받은 차량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3.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또는 피공제자의 생산물이나 공사물건이 피공제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으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15.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또는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공사의 종료(공사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또는 폐기 후 공사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공사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 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8. 가입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의무공제인 가스사고 배상책임공제 또는 화재공제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9. 지하 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티끌, 먼지,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1. 이륜자동차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2.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 또는 일부 부분품, 부속품이나 부속기계장치만의 도난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화재, 도난 또는 타이어 이외의 부분과 함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23. 자연마모, 결빙, 기계적 고장이나 전기적 고장으로 차량에 발생한 손해배상책임
 24. 차량에 부착한 고정설비가 아닌 차량내에 놓아둔 물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5. 정부, 공공기관,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몰수, 국유화 또는 징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6. 주차장내에서 자동차 또는 중기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의 차량 조작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7. 차량의 수리작업(차량부품의 수리, 대체작업을 포함합니다.)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8. 차량의 사용손실 등 일체의 간접손해
 2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제 5 조 (양도)

이 공제목적의 양도는 농협의 서면동의 없이는 농협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농협이 서면동의한 경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 6 조 (조사)

- ① 농협은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농협은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공제기간중 또는 공제기간 종료후 3년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손해방지 의무)

-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밟을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농협에 그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손해액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계약후 알릴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보험을 포함합니다)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9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농협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농협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농협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에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해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협은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손해의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특별약관의 소멸)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4조(만기환급금)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기간중에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체육시설 (이하 "시설"이라 하며,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체육시설에 한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장해(이하 "신체장해" 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 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2 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① 농협이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피공제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그러나 피공제자가 손해방지의 방법을 강구한 후에 배상책임이 없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방법을 강구함에 따른 비용중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과 지급에 관하여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은 비용만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피공제자가 권리의 보전 또는 행사의 절차를 밟는 데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4. 피공제자가 미리 농협의 승인을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5.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이 손해배상처리를 할 경우 피공제자가 농협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급한 비용
- ② 제1항의 손해에 대한 농협의 보상한도는 매회의 사고마다 자기부담금(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되 아래와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 :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
 2.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비용 : 피공제자가 지급한 비용의 전액. 그러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이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비용은 보상한도액의 제1항 제1호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 3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의 고의
 2.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3.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4.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피공제자가 아래에 열거한 체육시설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각종의 경기단체(협회, 연맹을 포함)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운동선수 또는 그의 지도 감독을 위하여 등록된 자가 그 운동을 위하여 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피공제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공제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4.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5.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피공제 시설내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로 생긴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피공제자에게 고용된 자(체육지도자, 안전요원 등 포함)가 피공제자의 업무에 종사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7.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8. 피공제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피공제자의 시설내에서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피공제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공제자가 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공제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피공제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체육시설 구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이 피공제자의 점유를 벗어난 상태에서 그 음식물이나 재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 합니다), 접골사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체육시설 이용자의 신체장해에 대하여 피공제자 또는 체육지도자가 치료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3. 지하매설물에 입힌 손해 및 손해를 입은 지하매설물로 생긴 다른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4.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피공제자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에 대한 배상책임

제 4 조 (양도)

이 공제목적의 양도는 농협의 서면동의 없이는 농협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농협이 서면 동意的한 경우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그러나 기명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과 법정대리인이 선임될 때까지의 재산관리인을 그 의무범위 내에서 피공제자로 합니다.

제 5 조 (조사)

- ① 농협은 공제기간 중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공제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농협은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공제기간중 또는 공제기간 종료 후 3년 내에는 언제든지 피공제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 6 조 (계약후 알릴의무)

- ① 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담보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계약을 다른 공제(보험을 포함합니다)자와 맺으려고 하든지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할 때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 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7 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발생의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 주소와 성명
 2.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함으로써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농협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1항의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8 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공제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약관에 의하여 농협이 피공제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내에서 농협에 대하여 공제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협은 피공제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공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피공제자 및 계약자는 필요한 서류,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공제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농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공제자를 대신하여 농협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협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및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2항,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9 조 (손해방지의무)

- ① 공제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조사하여 구하는 일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취할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공제자가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농협의 동의를 받을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액을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1.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2. 제1항의 제3호의 경우에는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뺍니다.
 3. 제1항의 제4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과 농협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특별약관의 소멸)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24조(만기환급금)에서 정한 만기환급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용어풀이

신체장해	신체장해라 함은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재물손해	재물손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②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③ 물리적으로 망그러뜨려지지 아니한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사 고	사고라 함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을 포함하여 위험이 서서히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말합니다.
1회의 사고	1회의 사고라 함은 하나의 원인 또는 사실상 같은 종류의 위험에 계속적, 반복적 또는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그 결과로 발생한 사고로써 피공제자나 피해자 수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수에 관계없이 1회의 사고로 봅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라 함은 법률규정에 따른 배상책임을 말하며, 계약에 의하여 법률규정보다 가중된 배상책임(계약상의 가중책임)은 제외합니다.

자동차	자동차라 함은 도로상을 주행하기 위하여 설계된 것으로써 육상에서 사용하는 원동기를 붙인 차량, 트레일러 또는 반 트레일러 및 여기에 장착된 장치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차량(여기에 부착된 기계나 장치를 포함합니다)은 자동차로 보지 아니합니다. 1) 공공도로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차량 2) 피공제자가 소유, 임차한 구내에서만 사용하는 차량 3) 무한궤도를 주행하는 차량 4) 자체추진력 여부에 관계없이 장소의 이동을 목적으로 아래의 기계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차량 (1) 파워크레인, 쇼벨, 로더, 굴삭기, 천공기 (2) 그레이더, 스크레퍼, 롤러등의 도로건설 또는 포장용 기계 (3) 에어컴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4) 고소작업용 차량 및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 5) 위 1) 내지 4) 이외의 차량으로 주로 사람이나 물건운송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 그러나 아래의 장치를 항구적으로 부착한 자력주행차량은 자동차로 봅니다. (1) 제설, 도로의 보수관리(도로건설이나 포장공사는 제외합니다) 및 도로청소용 장치 (2) 작업원의 승강용 기계장치로써 자동차 또는 트럭의 차대에 장착된 고소작업용 차량 및 이와 유사한 장치 (3) 에어컴프레셔, 펌프, 발전기(분무용, 용접용, 빌딩청소용, 지질조사용, 조명용 및 우물탐사용을 포함합니다)
공해물질	공해물질이라 함은 연기, 증기, 매연, 연무, 산, 알칼리, 화학물질 및 폐기물(재생, 수리 또는 재활용되는 물질을 포함합니다)을 포함한 고체, 액체, 기체상태의 열성자극물이나 오염물질을 말합니다.
체육지도자	체육지도자라 함은 국민체육진흥법상의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 또는 기타 공인된 사회기관에 의하여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부여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이하 "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 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의 질병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공제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 3 조 (피공제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공제자라 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되고 이 특별약관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 피공제자 본인(이하 "본인"이라고 합니다)
 2.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4. 계약자 또는 본인의 종업원(이하 "종업원"이라 합니다)
- ② 이 계약을 맺은 후 피공제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본인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농협에 알리고 농협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이 계약의 공제기간중 피공제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공제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공제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공제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④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농협은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공제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특별약관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6 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농협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8조(후유장해공제금)의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피공제자의 남은 공제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② 농협이 제7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또는 제8조(후유장해공제금)의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공제자에 대한 농협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당 피공제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사망공제금)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피공제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공제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피공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 8 조 (후유장해공제금)

- 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손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손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애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 9 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 ①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농협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 10 조 (공제금의 지급한도)

- ①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애공제금은 고도후유장애공제금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농협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애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애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공제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 12 조 (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공제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

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농협은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공제료를 더 내야 할 경우 농협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농협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농협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제3항과 같습니다.

제 13 조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농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기종합 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29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농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농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 3. 농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농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4.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농협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14 조 (손해의 통지)

- ①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지급공제금), 제19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및 제24조(만기환급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일반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이하 "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1사고당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 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공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공제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일반상해의료비를 180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 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금을 지급

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 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 ⑤ 제1항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3항의 비용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3항의 비용을 초과하였을 때, 농협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공제 및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공제 및 보험종목은 제3공제(보험 포함)의 상해·질병·간병공제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 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의 질병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③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 3 조 (피공제자의 범위)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공제자라 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되고 이 특별약관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 피공제자 본인(이하 "본인"이라고 합니다)
2.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4. 계약자 또는 본인의 종업원(이하 "종업원"이라 합니다)

② 제1항 제4호의 종업원을 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은 공제년도 첫날을 기준으로 종업원의 수가 3명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③ 이 계약을 맺은 후 피공제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본인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농협에 알리고 농협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④ 이 계약의 공제기간중 피공제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공제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공제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공제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⑤ 제3항, 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농협은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공제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특별약관의 소멸)

농협이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7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또는 제8조(후유장해공제금)의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공제자에 대한 농협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당 피공제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 ①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농협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 6 조 (공제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 7 조 (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공제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농협은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공제료를 더 내야 할 경우 농협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농협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농협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농협은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 8 조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농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기종합 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29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농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농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농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농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농협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9 조 (손해의 통지)

- ① 공제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피공제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지급공제금), 제19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및 제24조(만기환급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 1 조(계약의 체결 및 효력)

- . ① 이 특별약관은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다른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농협의 승낙으로 보통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보통약관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은 피공제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제 2 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 ① 농협은 보통약관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통약관에서 정한 공제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cc이하로서 3륜 이상인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cc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kW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 ③ 피공제자에게 공제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중"이라 함은 도로여부, 주정차여부, 엔진의 시동여부를 불문하고 피공제자가 이륜자동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핸들을 조작하거나 조작 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제 3 조(해지된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공제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12조(공제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 4 조(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과된 특별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업무중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이하 "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업무중(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 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의 질병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공제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 3 조 (피공제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공제자라 함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본인(이하 "본인"이라고 합니다)의 종업원(이하 "종업원"이라 합니다) 중에서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되고 이 특별약관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을 맺은 후 피공제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본인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농협에 알리고 농협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이 계약의 공제기간중 피공제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공제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공제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공제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④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농협은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공제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특별약관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공제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6 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농협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8조(후유장해공제금)의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피공제자의 남은 공제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② 농협이 제7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또는 제8조(후유장해공제금)의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공제자에 대한 농협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당 피공제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사망공제금)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피공제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피공제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정부기관이 피공제자의 사망을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호적에 사망이 기재된 경우에는 그 사고가 발생한 때에 피공제자가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사망공제금을 지급한 후에 피공제자의 생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을 회수합니다.

제 8 조 (후유장해공제금)

- 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애분류표(【별표4】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의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 9 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 ①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농협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 10 조 (공제금의 지급한도)

- ①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은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농협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공제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 12 조 (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공제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농협은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공제료를 더 내야 할 경우 농협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농협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농협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도 제3항과 같습니다.

제 13 조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농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29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농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농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농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농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농협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14 조 (손해의 통지)

- ①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지급공제금), 제19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및 제24조(만기환급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업무중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이하 "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업무중(출·퇴근은 업무중으로 봅니다)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이하 같습니다)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1사고당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 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공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공제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업무중 상해의료비를 180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 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 ⑤ 제1항의 사고로 인한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⑥ 제1항 및 제3항의 비용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3항의 비용을 초과하였을 때, 농협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공제 및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공제 및 보험종목은 제3공제(보험 포함)의 상해·질병·간병공제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 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의 질병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 3 조 (피공제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공제자라 함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 본인(이하 "본인"이라고 합니다)의 종업원(이하 "종업원"이라 합니다) 중에서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되고 이 특별약관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을 맺은 후 피공제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본인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농협에 알리고 농협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③ 이 계약의 공제기간중 피공제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공제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공제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공제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④ 제2항, 제3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농협은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공제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특별약관의 소멸)

농협이 업무중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7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또는 제8조(후유장해공제금)의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공제자에 대한 농협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당 피공제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 ①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중하게 된 경우 농협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손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 6 조 (공제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 7 조 (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공제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론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농협은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공제료를 더 내야 할 경우 농협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농협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농협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농협은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 8 조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농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기종합 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29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농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농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농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농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 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농협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익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공제로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9 조 (손해의 통지)

- ① 공제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피공제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지급공제금), 제19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및 제24조(만기환급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화재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 화재사고(벼락, 폭발·파열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이하 "화재상해"라 합니다)를 입었을 때에는 그 화재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 (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화재상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 1. 피공제자가 화재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 2. 피공제자가 폭발·파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③ 제2항의 화재상해중 아래의 경우에 생긴 상해는 화재상해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운전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단,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의 질병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정신질환
 7.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 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피공제자의 사형
 9.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10.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1.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2. 제11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2. 제1항의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

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 3 조 (피공제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공제자라 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되고 이 특별약관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 피공제자 본인(이하 "본인"이라고 합니다)
 2.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4. 계약자 또는 본인의 종업원(이하 "종업원"이라 합니다)
- ② 제1항 제4호의 종업원을 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은 공제년도 첫날을 기준으로 종업원의 수가 3명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③ 이 계약을 맺은 후 피공제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본인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농협에 알리고 농협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④ 이 계약의 공제기간중 피공제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공제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은 이 계약의 남은 공제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공제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⑤ 제3항, 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농협은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공제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계약의 무효)

타인의 사망을 공제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협은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6 조 (특별약관의 소멸)

- ① 농협이 한번의 사고에 대하여 이 특별약관에 따라 제8조(후유장해공제금)의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피공제자의 남은 공제기간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 ② 농협이 제7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또는 제8조(후유장해공제금)의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공제자에 대한 농협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회사는 해당 피공제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7 조 (사망공제금)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화재사고로 화재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사망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8 조 (후유장해공제금)

- ① 고도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화재사고로 화재상해를 입고 그 화재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4】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고도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일반후유장해공제금 :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화재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공제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 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후유장해공제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 지급률이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후유장해의 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그 이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중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되 장해분류표에 장해판정 시기가 별도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장해분류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후유장해는 피공제자의 직업, 연령,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⑥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신체부위에 장해분류표상의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제 9 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 ①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화재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화재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화재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농협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공제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화재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 10 조 (공제금의 지급한도)

- ① 농협이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사고에 대한 후유장해공제금은 이 특별약관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농협은 하나의 사고로 사망공제금과 일반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이를 각각 지급합니다. 그러나 고도후유장해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에는 사망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공제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 12 조 (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공제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공제료를 더 내야 할 경우 농협의 청구에 대해 공제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농협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사실을 농협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농협은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 13 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농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의 제29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1. 농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농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 3. 농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때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농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 4.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농협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12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14 조 (손해의 통지)

- ①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사고가 생긴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 15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지급공제금), 제19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및 제24조(만기환급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화재상해 의료비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기간(이하 "공제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화재사고(벼락, 폭발·파열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에 상해(이하 「**화재상해**」라 합니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1사고당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피공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로부터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피공제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치료를 받던 중 공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공제기간 만료전 사고일로부터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제1항의 화재상해 의료비를 180일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공제자가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 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합니다)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비용
 2. 병실료 차액(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차액)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내에서 예외로 합니다.

3. 진료와 무관한 제비용(TV시청료, 전화료, 제증명료 등), 상당한 사유가 없는 고단위 영양제 투여비용, 의사의 임상적 소견과 관련 없는 검사비용

⑤ 제1항의 화재상해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피공제자가 화재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2. 피공제자가 폭발·파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신체상해

⑥ 제1항의 화재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게도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생긴 중독증상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세균성 음식물 중독과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아래의 경우에 생긴 상해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1. 운전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파열사고로 입은 신체상해
2.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⑦ 제1항 및 제3항의 비용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할 다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3항의 비용을 초과하였을 때, 농협은 이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위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의료비 공제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용어풀이>

다수의 공제 및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공제 및 보험종목은 제3공제(보험포함)의 상해·질병·간병공제 및 손해보험의 종합·장기손해·개인연금·퇴직보험으로 합니다.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농협은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피공제자의 고의
 2. 수익자의 고의. 그러나 그 수익자가 공제금의 일부 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수익자에게 해당하는 공제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제금을 다른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3. 계약자의 고의
 4. 피공제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형법상의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다만, 형법상 정당방위, 긴급 피난 및 정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피공제자의 질병
 6. 피공제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7. 피공제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그밖의 의료처치. 그러나 농협이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에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8.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10. 핵연료물질(사용이 끝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제10호 이외의 방사선을 쬌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 ② 농협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에 해당하는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를 돌려드리지 아니합니다.
- ③ 농협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공제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를 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또는 이와 비슷한 위험한 활동
 2. 모타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 3 조 (피공제자의 범위)

- ① 이 특별약관에서 피공제자라 함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자 중에서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되고 이 특별약관에 가입된 자를 말합니다.
 1. 피공제자 본인(이하 "본인"이라고 합니다)
 2.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자녀
 4. 계약자 또는 본인의 종업원(이하 "종업원"이라 합니다)
- ② 제1항 제4호의 종업원을 피공제자로 하는 계약은 공제년도 첫날을 기준으로 종업원의 수가 3명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③ 이 계약을 맺은 후 피공제자를 증가, 감소 또는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본인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그 사실을 농협에 알리고 농협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④ 이 계약의 공제기간중 피공제자 감소의 경우는 당해 피공제자의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피공제자의 공제기간은 이 계약

의 남은 공제기간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또는 환급공제료를 받거나 돌려드립니다.

- ⑤ 제3항, 제4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농협은 새로이 증가 또는 교체되는 해당 피공제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4 조 (특별약관의 소멸)

농협이 화재상해 사망·후유장해담보 특별약관 제7조(사망공제금)의 사망공제금 또는 제8조(후유장해공제금)의 고도후유장해공제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손해보상의 원인이 생긴 때부터 해당 피공제자에 대한 농협의 책임은 소멸되며, 이 경우 농협은 해당 피공제자에 대한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5 조 (다른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

- ①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경우 이미 존재한 신체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으로 또는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이 발생한 상해나 질병의 영향으로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 농협은 그 영향이 없었던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 ② 정당한 이유없이 피공제자가 치료를 게을리 하거나 또는 계약자나 수익자가 치료를 하여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제1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상해가 중하게 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제 6 조 (공제금 청구권의 상실)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가 손해의 통지 또는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에는 피공제자 또는 수익자는 손해에 대한 공제금청구권을 상실합니다.

제 7 조 (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계약을 맺은 후 피공제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농협에 알리고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② 농협은 제1항에 따라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그 차액공제료를 돌려드리며,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제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농협은 제1항의 통지에 따라 공제료를 더 내야 할 경우 농협의 청구에 대해 계약자가 그 지불을 게을리 했을 때, 농협은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기 전에 적용된 공제요율(이하 "변경전 요율"이라 합니다.)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후에 적용해야 할 공제요율(이하 "변경후 요율"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공제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변경된 직업 또는 직무와 관계 없는 사고로 발생한 손해에 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사실을 농협에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농협은 동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에게 제3항에 의해 보상됨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제 8 조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 ① 농협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공제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29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1. 농협이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농협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공제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건강진단을 받은 피공제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났을 때
 3. 농협이 이 계약의 청약시 피공제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의하여 승낙통지를 한 때(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농협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4. 공제를 모집한 자(이하 "직원 등"이라 합니다)가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의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청약서에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자필로 서명한 경우는 제외)
- ③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제1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농협은 그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사실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에는 해약환급금 또는 이미 납입한 공제료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⑤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손해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손해를 제7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⑥ 손해가 제1항에 해당되는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닌 것으로 증명된 때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9 조 (손해의 통지)

- ① 공제목적에 손해가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계약자, 피공제자가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지급공제금), 제19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및 제24조(만기환급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점포휴업손해담보 특별약관

제 1 조 (보상하는 손해)

농협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목적(피공제자가 영업을 하는 건물 또는 건축물의 구내중 타인이 점유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이 아래의 사고로 생긴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공제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입은 결과로 휴업 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
2. 버락
3. 파열 또는 폭발
4. 항공기의 추락 또는 접촉이나 항공기로부터의 물체의 낙하
5. 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

제 2 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농협은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 제15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및 아래의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1. 계약자 또는 피공제자가 소유 또는 운전하는 차량과의 충돌이나 접촉
2. 차량의 운행으로 생긴 작은 돌, 더러운 물의 날아 흩어짐으로 인한 손해
3. 소요 또는 노동쟁의로 인한 휴업손해

제 3 조 (용어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약정복구기간 : 계약당시 공제가입증서(공제증권)에 기재된 약정복구기간을 말합니다.
2. 추정복구기간 : 공제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

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3. 복구기간 : 공제금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공제의 목적이 손해를 입은 때로부터 지체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제의 목적을 복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 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총이익 : 매출액에서 상품매입비 및 원재료비(기초재고량을 더하고, 기말재고량을 뺍니다)를 뺀 잔액을 말합니다.
5. 경상비 : 사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6. 매출감소액 : 사고직전 12개월중 복구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매출액에서 복구기간내의 매출액을 뺀 잔액을 말합니다.
7. 휴업일수 비율

$$\text{휴업일수비율} = \frac{\text{복구기간내의 휴업일수 (공휴일을 제외합니다. 이하같습니다)}}{\text{약정복구기간내의 영업가능일수 (공휴일을 제외하며, 공제목적이 손해를 입었던 때부터 기산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단, 일부 휴업의 경우에는 복구기간내의 매출감소액 등을 고려하여 타당한 휴업일수의 조정을 해야 합니다.

8. 지급한도율

$$\text{지급한도율} = \frac{\text{최근 회계년도(1년간)의 총이익} \times 1.1}{\text{최근 회계년도(1년간)의 매출액}}$$

제 4 조 (휴업손실 공제금)

- ①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입었을 경우 농협이 지급하는 휴업손실공제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text{휴업손실공제금} = \text{공제가입금액} \times \text{휴업일수비율}$$

- ② 제1항의 휴업손실 공제금은 복구기간내의 매출감소액에 지급한도율을 곱해서 얻은 금액에서 복구기간내에 지출하지 않은 경상비 등의 비용을 뺀 잔액을 한 도로 합니다.

제 5 조 (특별비용)

- ① 농협은 피공제자가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를 입고 휴업일수비율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추가비용(손해를 입은 공제의 목적을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하 "특별비용" 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특별비용은 그 비용지출에 의해 감소된 휴업일수 비율을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 6 조 (중복지급)

농협은 한 사고에 대하여 휴업손실 공제금과 특별비용을 합하여 보상할 경우에는 공제가입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제 7 조 (매출액, 지급한도율의 조정)

농협은 영업에 대해 특별한 사정의 영향이 있었을 때 또는 영업의 추세가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공제금의 산출에 있어 매출액 및 지급한도율에 대해 공정한 조정을 행합니다.

제 8 조 (중복공제)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에 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경우 각각의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공제금의 합계액(이하 "보상책임 합계액" 이라 합니다)이 제4조(휴업손실 공제금) 및 제5조(특별비용)의 휴업손실공제금과 특별비용의 합계액(이하 "손해액" 이라 합니다)을 넘었을 때에는 농협은 이 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액의 보상책임합계액에 대한 비율을 손해액에 곱하여 얻은 금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합니다.

제 9 조 (공제가입금액의 자동복원)

농협이 휴업손실 공제금을 지급한 후에도 이 특별약관의 공제가입금액은 감액되지 아니합니다.

제 10 조 (공제계약의 효력상실)

제1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발생한 후 영업을 계속하지 아니할 때 이 계약은 손해발생시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법령에 따라 규제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 11 조 (특별약관의 소멸)

보통약관 제8조(계약의 소멸) 제1항에 의하여 보통약관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도 소멸하며 이 경우 농협은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12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단,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8조(지급공제금), 제19조(공제금 등의 지급한도) 및 제24조(만기환급금)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공제료 자동납입 특별약관

제 1 조 (공제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지정계좌를 이용하여 공제료를 자동납입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공제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농협은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공제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공제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공제료 납입일로 하여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1조(공제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제 2 조 (공제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료납입 해당일에도 불구하고 농협과 계약자가 별도로 정한 일자로 합니다.

제 3 조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즉시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전자거래 특별약관

제 1 조 (적용범위)

농협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컴퓨터를 이용하여 공제를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이하 「사이버몰」 이라 합니다)을 이용하여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2 조 (청약서 부분 및 공제약관의 교부)

- ① 농협은 장기종합프로젝트공제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등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이버몰에 게시된 청약서, 공제약관 전부 및 공제약관의 중요내용에 모두

동의를 한 경우에는 청약서 및 공제약관 교부와 공제약관 중요내용을 알려드린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농협이 제1항을 위반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협은 이미 납입한 공제료에 이 공제의 공제계약대출(공제약관대출)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제 3 조 (전자서명의 효력)

농협은 보통약관 제3조(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물에서 계약의 청약과 관련하여 계약자 등이 청약서에 전자거래기본법 제11조 또는 전자서명법 제3조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한 경우 그 전자서명을 계약자 등이 직접 서명날인(도장을 찍음)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공제료의 납입)

- ① 이 특별약관에 의한 공제료의 납입은 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을 이용한 자동납입이나 신용카드농협의 신용카드(이하 「신용카드」라 합니다)를 이용한 납입에 한합니다.
- ② 자동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을 받은 날을,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입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공제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공제료 납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공제료가 이체된 날과 카드농협의 승인을 받은 날을 공제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 ③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 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농협에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공제자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⑤ 제4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 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 통보를 받은 카드, 카드 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 5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신용카드 이용 공제료납입 특별약관

제 1 조(적용범위)

농협은 이 신용카드 이용 공제료납입 특별약관에 따라 신용카드회사(이하 『카드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을 계약자로 하여 초회 공제료를 납입하는 경우나

카드회사의 카드회원인 계약자가 회사와 보험대리점계약을 체결한 신용카드 법인 대리점을 통하여 공제료를 자동납입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제 2 조(공제료의 영수)

농협은 이 특별약관에 따라 공제계약자가 정해진 신용카드로써 공제료를 결제하기 위하여 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공제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카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제 카드회사의 승인을 받은 날을 공제료의 영수시점으로 봅니다)

제 3 조(사고카드계약)

- ① 계약자가 사고카드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공제자의 보장개시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② 제1항의 사고카드라 함은 유효기간이 경과한 카드, 위조·변조된 카드, 무효 또는 거래정지된 카드, 카드상에 기재되어 있는 회원과 이용자가 서로 다른 카드를 말합니다.

제 4 조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별표1】

가스사고배상책임 / 신체손해 배상책임의
부상급별 지급공제금표

상해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1 급	1,500 만원	1.고관절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 2.척추체분쇄성골절 3.척추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신경증상으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태 4.외상성 두개강내 출혈로 개두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5.두개골의 함몰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태 6.고도의 뇌좌상으로 생명이 위독한 상해 (48시간 이상 혼수상태 지속) 7.대퇴골간부의 분쇄성골절 8.경골하 3분의 1부 분쇄골절 9.3도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 이상 인 상해 10.사지와 구간부에 연부조직손상이 심해 유경식 피술이 불가피한 상해 11.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800 만원	1.상박골간부분쇄형골절 2.척추체의 설상압박골절이 있으나 제신경증상 이 없는 상해 3.두개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현저한 상해 4.내부장기파열과 골반골절이 동반된 상해 5.슬관절탈구 6.족관절부골절과 골절성탈구가 동반된 상해 7.척골간부골절과 요골골두탈구가 동반된 상해 8.천장골간 관절탈구 9.그 밖에 2급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750 만원	1.상박골경부골절 2.상박골과부골절과 주관절탈구가 동반된 상해 3.요골과 척골의 간부골절이 동반된 골절상해 4.수근주상골골절 5.요골신경손상을 동반한 상박골간부골절 6.대퇴골간부골절 7.슬개골의 분쇄골절과 탈구로 인하여 슬개골 완전적출술이 적용되는 상해 8.경골과부골절이 관절면을 침범하는 상해 9.족근골척골간관절탈구와 골절이 동반된 상해 10.전후십자인대나 내외측반월상연골파열과 경골 극골절등이 복합된 슬대장

상해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3급	750만원	11.복부내장파열로 수술이 불가피한 상해 12.뇌손상으로 뇌신경마비를 동반한 상해 13.중증도의 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700만원	1.대퇴골과부골절 2.경골간부골절 3.거골경부골절 4.슬개인대파열 5.견갑관절부의 회전근개파열 6.상박골외측상과 전위골절 7.주관절부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3도 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안구파열로 적출술이 불가피한 상해 10.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500만원	1.골반골의 중복골절(말가이그니씨 골절등) 2.족관절부의 내외과골절이 동반된 상해 3.슬관절부의 내측 또는 외측부 인대파열 4.족중골골절 5.상박골간부골절 6.요골원위부골절 7.척골근위부골절 8.다발성극골절로 혈흉 또는 기흉이 동반된 상해 9.족배부근건파열창 10.수장부근건파열창 11.아킬레스건파열 12.2도 화상등의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3.23치이상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태 14.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400만원	1.소아의 하지장관골간부골절 2.대퇴골 대전자부절편골절 3.대퇴골 소전자부절편골절 4.다발성 중족골골절 5.치골·좌골·장골의 단일골절 6.단순슬개골골절 7.요골간부골절 (원위부골절을 제외한다) 8.척골간부골절 (근위부골절을 제외한다) 9.척골주두골절 10.다발성 중수골골절 11.두개골골절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상해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6급	400만원	12.외상성지주막하 출혈 13.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상해 14.19치이상 2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5.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250만원	1.소아의 상지장관골간부골절 2.족관절 내과골 또는 외과골골절 3.상박골상과 부골곡골절 4.고관절탈구 5.견갑관절탈구 6.견봉쇄골간관절탈구 7.족관절탈구 8.2도 화상등 연부조직손상이 체표의 약4.5퍼센트 이상인 상해 9.16치이상 1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0.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180만원	1.상박골상과부신전골절 2.쇄골골절 3.주관절탈구 4.견갑골골절 5.주관절내상박골소두골절 6.비골(다리)간부골절 7.족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8.다발성늑골골절 9.뇌좌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경한 상해 10.상악골골절 또는 하악골골절 11.13치이상 15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2.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140만원	1.척추의 극상돌기 또는 횡돌기골절 2.요골골두골골절 3.완관절내 월상골전방탈구등 수근골탈구 4.수지골의 골절과 탈구가 동반된 상해 5.중수골골절 6.수근골골절 (주상골을 제외한다) 7.족근골골절 (거골, 중골을 제외한다) 8.중족골골절 9.족관절부염좌 10.늑골골절 11.척추체간 관절부염좌와 주위연부조직 (인대, 근육등) 손상이 동반된 상해 12.완관절탈구 13.11치이상 12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급별	지급액	상 해 부 위
10급	120만원	1.외상성슬관절내혈종 2.중수골지골간관절탈구 3.수근골중수골간관절탈구 4.완관절부염좌 5.제불완전골절(비골<코>골절·수지골골절 및 족지골골절을 제외한다) 6.9치이상 10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7.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00만원	1.족지골관절탈구 및 염좌 2.수지관절탈구 및 염좌 3.비골(코)골절 4.수지골골절 5.족지골골절 6.뇌진탕 7.고막파열 8.6치이상 8치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9.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60만원	1. 8일 내지 14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15일 내지 26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3급	40만원	1. 4일 내지 7일간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8일 내지 14일간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14급	20만원	1. 3일 이하의 입원을 요하는 상해 2. 7일 이하의 통원을 요하는 상해 3. 1치 이하의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

※ 비 고

1.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개방성골절은 해당 등급보다 한급 높이 보상한다.
2.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단순성 선상골절로 골편의 전위가 없는 골절의 경우에는 해당등급보다 한급 낮게 보상한다.
3. 2급 내지 11급까지의 상병명중 2가지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로부터 하위 3등급 (예 : 2급 주종일 때에는 5급까지 사이)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때에 한하여 한급 높이 보상한다.
4. 일반외성과 치아보철을 요하는 상해가 중복되었을 때에는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각 상해급별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산액을 배상한다.

【별표2】

가스사고재상책임 / 신체손해 배상책임의
후유장해급별 지급공제금표

등 급	지급액	신 체 장 해
1 급	8,000 만원	1.두 눈이 실명된 사람 2.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반신마비가 된 사람 6.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급	7,200 만원	1.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 급	6,400 만원	1.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급	5,600 만원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두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등 급	지급액	신 체 장 해
5 급	4,800 만원	1.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급	4,000 만원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척추에 뚜렷한 기능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급	3,200 만원	1.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 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등 급	지급액	신 체 장 해
7 급	3,200 만원	7.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한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 급	2,400 만원	1.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 급	1,800 만원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등 급	지급액	신 체 장 해
9 급	1,800 만원	9.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500 만원	1.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14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5.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6.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9.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200 만원	1.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등 급	지급액	신 체 장 해
11급	1,200만원	6.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 을 잃은 사람 7.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10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1.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1,000만원	1.한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7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국부에 완전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13급	800만원	1.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5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사람 7.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등 급	지급액	신 체 장 해
13급	800만원	8.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500만원	1.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3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한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비 고

1. 신체장해가 20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절의 2분의 10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0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 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11.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 11번 항목은 신체손해 배상책임의 경우에만 해당됨)

【별표3】

가스사고재상책임의 후유장해급별 지급공제금표

등 급	지급액	신 체 장 해
1 급	6,000 만원	1.두 눈이 실명된 사람 2.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반신마비가 된 사람 6.두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7.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두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 급	5,400 만원	1.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두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두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 급	4,800 만원	1.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4 급	4,200 만원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한 팔을 팔꿈치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5.한 다리를 무릎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6.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두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등 급	지급액	신 체 장 해
5 급	3,600 만원	1.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한 팔을 손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3.한 다리를 발목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4.한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한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흉복부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 급	3,000 만원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모두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4.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척추에 뚜렷한 기능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7.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8.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급	2,400 만원	1.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 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등 급	지급액	신 체 장 해
7 급	2,400 만원	7.한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8.한 발을 족근중족관절이상에서 잃은 사람 9.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 13.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 급	1,800 만원	1.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6.한 팔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9 급	1,440 만원	1.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이하로 된 사람 2.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사람 3.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등 급	지급액	신 체 장 해
9 급	1,440 만원	9.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한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080 만원	1.한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사람 2.말하는 기능 또는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14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대고 말하지 아니하고는 큰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는 사람 5.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6.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9.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840 만원	1.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또는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4.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5.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

등 급	지급액	신 체 장 해
11급	840만원	6.한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 을 잃은 사람 7.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0.10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11.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12급	600만원	1.한 눈의 근접반사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7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4.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사람 5.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한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한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국부에 완전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남자 14.외모에 흉터가 남은 여자
13급	360만원	1.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사람 2.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5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아보철을 한 사람 5.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사람 7.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등 급	지급액	신 체 장 해
13급	360만원	8.한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짧아진 사람 10.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한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가운데발가락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급	240만원	1.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3치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4.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한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6.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외의 손가락의 끝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한 발의 가운데발가락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0.외모에 흉터가 남은 남자 11.한귀의 청력이 1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 비 고

1. 신체장해가 20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에 의하며, 굴절이상인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의 말절의 2분의 10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말절의 2분의 10이상을, 기타의 발가락에 있어서는 끝관절이상을 잃은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뚜렷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하였어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을 타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의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 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한다.

【별표4】

장해분류표

Ⅰ 총칙

1. 장해의 정의

- 1) “장해”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시 장애 회복의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장해 지급률의 20%를 공제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는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3. 기타

- 1) 하나의 장해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해분류표상 2가지 이상의 신체부위 또는 동일한 신체부위에서,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2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해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4) 장해진단서에는 ①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해의 경우 ① 개호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개호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1. 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눈이 멀었을 때	50
3)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5) 한눈의 교정시력이 0.1이하로 된 때	15
6) 한눈의 교정시력이 0.2이하로 된 때	5
7) 한눈의 안구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10
8) 한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5
9)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시력을 말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눈동자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광각”)를 말한다.
- 4) 안구운동장애의 판정은 외상후 1년 이상 경과한 후에 그 장애정도를 평가한다.
- 5) “안구의 뚜렷한 운동장애”라 함은 안구의 주시야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나 정면 양안시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를 남긴 때를 말한다.
- 6) “안구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의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7) “시야가 좁아진 때”라 함은 시야각도의 합계가 정상시야의 6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8)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인해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여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눈을 떴을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0) 외상이나 화상 등에 의하여 눈동자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눈동자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

(凹沒) 등에 의해 의안마저 삽입할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의안을 삽입할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1)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포함하여 장해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해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해평가 방법 중 피공제자에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청력장해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순음평균역치에 따라 적용한다.
-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3) “심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5)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뇌간유발반응청력검사(ABR), 자기청력계기검사, 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해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 1)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하며, 귓바퀴의 결손이 1/2미만이고 기능에 문제가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해로 평가한다.

3. 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양쪽 코의 호흡곤란 내지는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2)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와 각각 합산하여 지급한다.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80
3)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40
4)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6)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8)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9)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나. 장애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상하치아의 교합(咬合),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폐운동, 연하(삼킴)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 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어느 정도의 고형식(밥, 빵 등)은 섭취할 수 있으나 이를 씹어 잘게 부수는 기능에 제한이 뚜렷한 경우를 말한다.
- 5)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다음 4종의 어음 중 3종 이상

의 발음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 ① 구순음(ㅁ, ㅂ, ㅍ)
- ② 치설음(ㄴ, ㄷ, ㄹ)
- ③ 구개음(ㄱ, ㅋ, ㆁ)
- ④ 후두음(ㅇ, ㅎ)

- 6)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2종 이상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위 5)의 4종의 어음 중 1종의 발음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8) 뇌의 언어중추 손상으로 인한 실어증의 경우에도 말하는 기능의 장애로 평가한다.
- 9) “치아의 결손”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치아의 신경이 죽었거나 1/3 이상이 파절된 경우를 말한다.
- 10) 유상의치 또는 가교의치 등을 보철한 경우의 지대관 또는 구의 장착치와 포스트, 인레인만을 한 치아는 결손된 치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 11)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2) 어린이의 유치와 같이 새로 자라서 갈 수 있는 치아는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13) 신체의 일부에 탈착분리 가능한 의치의 결손은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외모”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애”라 함은 성형수술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며, 재건수술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5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2이상 결손

2) 머리

- ①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1) 얼굴

- ①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② 길이 5cm 이상의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③ 직경 2cm 이상의 조직함몰
- ④ 코의 1/4이상 결손

2) 머리

- ①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모발결손
- ② 머리뼈의 손바닥 1/2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3) 목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라 함은 해당 환자의 수지를 제외한 수장부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², 1/4 크기는 20cm²),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², 1/4 크기는 12cm²),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², 1/4 크기는 6cm²)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20
8)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5
9)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10

나. 장해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목뼈) 이하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척추(등뼈)의 장해는 퇴행성 기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본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3) 심한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4) 뚜렷한 운동장해
 - ①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② 머리뼈와 상위경추(상위목뼈: 제1,2목뼈)간의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을 때
- 5) 약간의 운동장해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6) 심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3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7) 뚜렷한 기형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인하여 15° 이상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8) 약간의 기형
1개 이상의 척추의 골절 또는 탈구로 인하여 경도(가벼운 정도)의 전만증 및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9) 심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이상 수술하거나 하나의 추간판이라도 2회이상 수술하고 마비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

- 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 10)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여 신경증상이 뚜렷하고 특수 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1)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
특수검사(뇌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하지방사통(주변부위로 뻗치는 증상) 또는 감각 이상이 있는 경우
 - 12)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수술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7. 체간골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체간골”이라 함은 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부위로 한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이라 함은 아래와 같다.
 - ①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 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또는 여자에 있어서 정상분만에 지장을 줄 정도의 골반의 변형이 남은 상태
 - ②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 3)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또는 어깨뼈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라 함은 나체가 되었을 때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를 말하며, 방사선 검사를 통하여 측정한 각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8. 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팔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팔”이라 함은 어깨관절(肩關節)부터 손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관절”이라 함은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및 손목관절을 말한다.
- 5) “한팔의 손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손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 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팔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팔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애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애부위의 장애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 나) “심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 다) “뚜렷한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라) “약간의 장애”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상지(팔과 손가락)의 후유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팔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9. 다리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다리의 3대관절중 1관절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한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1)한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2)한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판정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기능장애(예컨대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생긴 경우)와 일시적인 장애에 대하여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 3) “다리”라 함은 엉덩이관절(股關節)로부터 발목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이라 함은 고관절, 무릎관절 및 발목관절을 말한다.
- 5) “한다리의 발목이상을 잃었을 때”라 함은 발목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하지의 3대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동요

성 유무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미국의사협회(A.M.A.)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지침”의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르며, 관절기능 장애를 표시할 경우에는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해상태를 명확히 한다.

가)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라 함은

- ① 완전 강직(관절굳음) 또는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② 근전도 검사상 완전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0등급(Zero)”인 경우

나) “심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4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③ 근전도 검사상 심한 마비 소견이 있고 근력검사에서 근력이 “1등급(Trace)”인 경우

다) “뚜렷한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라) “약간의 장해”라 함은

- ①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②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7)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8)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해를 남긴 때"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9) "뼈에 기형을 남긴 때"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10) 다리의 단축은 상전장골극에서부터 경골내측과 하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정상 측 다리의 길이와 비교하여 단축된 길이를 산출한다.

다리 길이의 측정에 이용하는 골표적(bony landmark)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나 다리의 단축장해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는 scanogram을 통하여 다리의 단축정도를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후유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합산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2) 한 다리의 3대 관절중 1관절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1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0. 손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1손가락 마다)	10
4) 한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손가락 마다)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2)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3) “손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으로 손가락뼈를 잃었거나 뼈조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엑스선 사진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 5)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손가락의 생리적 운동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이며 이 경우 손가락관절의 굴신운동 가능영역에 의해 측정한다. 첫째 손가락 이외의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6)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1.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1발가락마다)	5
5) 한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1발가락마다)	3

나. 장애판정기준

- 1)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잃었을 때를 말한다.
- 2)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3)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 있어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쪽에서 발가락뼈를 잃었을 때를 말하고 단순히 살점이 떨어진 것만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 4)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발가락의 생리적 운동 영역이 정상 운동가능영역의 1/2 이하가 되었을 때를 말하며, 이 경우 발가락의 주된 기능인 발가락 관절의 굴신기능을 측정하여 결정한다.
- 5)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합산한다.

12. 흉·복부장기 및 비뇨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0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 ① 심장,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②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③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때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위, 대장 또는 체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소장 또는 간장의 3/4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 ③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 ①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 및 한쪽의 폐를 잘라내었을 때
 - ② 장루, 요도루, 방광누공, 요관 장문합이 남았을 때
 - ③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으로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 ④ 음경의 1/20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 등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 ⑤ 항문 괄약근의 기능장애로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이 있는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장애를 평가하고 둘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5)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 ~ 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가 남아 타인의 지속적인 감시 또는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가 남아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타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감시를 요할 때	70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장보기 등의 기본적 사회 활동을 혼자서 할 수 없는 상태	40
5) 극심한 치매 : CDR 척도 5점	100
6) 심한 치매 : CDR 척도 4점	80
7)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8)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9) 심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70
10) 뚜렷한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40
11) 약간의 간질발작이 남았을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1) 신경계

- ①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에 손상으로 인하여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② 위 ①의 경우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③ 신경계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④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6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⑤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2) 정신행동

- ① 상기 정신행동장애 지급률에 미치지 않는 장애에 대해서는 “<붙임>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에 따라 지급률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 ② 일반적으로 상해를 입은 후 24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수상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다만, 장애는 충분한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③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 전문의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④ 전문의란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를 말한다.
- ⑤ 평가의 객관적 근거
 - ㉠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을 기초로 한다.
 - ㉡ 객관적 근거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 감정의의 추정 혹은 인정
 -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SPECT 등)
 - 정신과 혹은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시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심리학적 평가보고서
- ⑥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간질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⑦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 편집증, 조울증(정서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⑧ 정신 및 행동장애의 경우 개호인은 생명유지를 위한 동작 및 행동이 불가

능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을 요하는 상태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호의 내용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개호와 행동감시를 위한 개호를 구별하여야 한다.

3) 치매

① “치매”라 함은

- 뇌 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 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상기에 의한 기질성 장애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②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간질

① “간질”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에 의거하여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② “심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시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③ “뚜렷한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④ “약간의 간질 발작”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⑤ “중증발작”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⑥ “경증발작”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유형	제한정도에 따른 지급률
이동동작	-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지급률 40%) -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방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30%) - 목발 또는 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20%) -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파행이 있는 상태, 난간을 잡지않고 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계속하여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10%)
음식물 섭취	- 식사를 전혀 할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20%) -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15%) -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5%)
배변 배뇨	-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20%) -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화장지로 닦고 옷을 입는 일에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15%) -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10%) -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운전, 작업, 교육 등)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5%)
목욕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없이 샤워 또는 목욕을 할 수 없는 상태(10%) - 샤워는 가능하나, 혼자서는 때밀기를 할 수 없는 상태(5%) - 목욕시 신체(등 제외)의 일부 부위만 때를 밀 수 있는 상태(3%)
옷입고 벗기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없이 전혀 옷을 챙겨 입을 수 없는 상태(10%) -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없이 상의 또는 하의 중 하나만을 착용할 수 있는 상태(5%) - 착용은 가능하나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마무리(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는 불가능한 상태(3%)

身體部位的 說明圖

